

[서식 예] 입영처분 취소청구의 소

소 장

원 고 O O 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 OOO-OOO)

피 고 △△지방병무청장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입영처분 취소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20 ○ . . 원고에게 20 ○ . . 아지 ○ 도 ○ 군 ○ 면 ○ 길 제 훈련소로 입대하라고 한 입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입영처분 및 입영사유

피고는 원고가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☆☆주식회사의 선반공으로 근무하며 산업 기능요원에 편입되어 해당 전문분야인 선반공으로 계속 종사하여 오다가 19○ ○. ○. ○. 위 회사의 노동조합 전임자로 선출된 것을 이유로 병역법 제40조 제 2호 소정의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을 취소하고 병역법 제16조에 의하여 현



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하였습니다.

2. 불복사유

- 가. 피고는 원고가 병역법 제40조 제2호 소정의 산업기능요원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의 사유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하고 입영처분을 하였으나, 병역법 제41조 제1항은 위 제40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편입을취소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연장하여 종사하게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,
- 나.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,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 등에 의하면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쟁의행위가 제한될 뿐으로서 단결권은 제한되지 아니하여 노조의 활동이 보장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들 규정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 중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게 된 자는 병역법 제40조 제2호 소정의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할 것입니다.

3. 결 어

산업기능요원 복무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병역의무이행의 형평을 기하고 군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 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 기술인력을 방위산업체 등에서 해당 전문분야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종사하게 하고 그 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입영처분은 부당하므로 이에 피고의 입영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자 이 건 소 제기에 이르렀습니다.

입 증 서 류

1. 갑 제1호증

법인등기사항증명서

1. 갑 제2호증

단체협약서

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각 1통

1. 소장부본

1통

1. 납 부 서

1통

2000. 0. 0.

원 고 ㅇ ㅇ ㅇ (인)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 큼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9 ~ 34조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방법 및 기 간	· 항소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0조) ·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6조)		

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,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 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.

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